2006년 수출입은행권한법 요약본

* 이 법은 미국에서 타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타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법률이다. 주로 소기업(small business)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시 자금 대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이 법에서는 sec. 3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승인받은 자와 미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기타 기관과의 협력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SEC. 6.에서 소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입은행법 section3에 내용을 추가하였다.
* 은행 내에 소기업 전담 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두어서 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서 얻은 기회와 이익에 관한 조언과 피드백, 특히 구제실행에 관한 분야, 소기업 니드에 맞춘 상품의 재단, 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의 확대 등의 사항을 실행할 것을 규정한다.

* 은행에 소기업 위원회를 두고 소기업의 직접 수출에 관한 거래의 시의 적절한 절차와 인수 등 소기업 이해관계에 관한 은행 정책과 협동으로서, 소기업 이해관계와 관련있는 신상품 또는 새로운 은행 상품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 sec. 8. 에서는 대출과 보증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규정

한다.

* SEC. 10.에서 1945년 수출입 은행법 Section 10을 개정하여 조건부 신용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은행이 조건부 신용보조를 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 sec. 12 에서는 융자신청인들에게 신청상황에 관하여 통지 해 줄 것을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이 관련 정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신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sec. 14에서는 여성 소유의 기업과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소기업에 관한 부서를 설립하여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융자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한다.

* sec. 17에서 신 재생에너지 추진 사업을 위한 부서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관하여 은행이 신용 보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한다.